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3 . 6 . 1 5 . (목)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0
제출일자 : 2023. 5. 31.
회부일자 : 2023. 6. 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도기욱 의원 외 19명

2. 제안 이유

○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문화관광 향유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관광약자를 배려한 관광서비스는 미흡함.

○ 이에,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경북도민 누구나 쉽게 관광환경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대상시설의 설치기준과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바. 경상북도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관광정책과) :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6월 5일 ~ 6월 10일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 최근 신체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문화관광 향유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여건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현재 경상북도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18만 2,835명,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61만 8,275명(전체인구의 23.8%)으로, 장애인·노인 등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 및 관광약자는 물론,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경북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1]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히 관광약자를 위한 부분적 배려를 넘어 모든 사람의 여행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1) '무장애(barrier free)'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인·노인,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없애주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고동완 외(2006).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상위법령 및 근거, 용어 정의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조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내에는 2021년 말 기준 44만 9,369명[2]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을 통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 안 제4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경북도차원의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재원확보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 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장차량 임대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는 무장애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 통계청(자원봉사자 현황).

규정으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도내 23개 시·군의 관광시설, 특별교통수단, 편의시설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는 '문화관광 담당국장, 보건복지 담당국장, 교통정책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 안 제15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 관계기관 협업이 중요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6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 의견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장애인·노인, 관광취약계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련 시책을 통하여 관광복지 시책 강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무장애

관광도시’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약자가 불편함 없이 관광지를 이용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한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관광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2023 경상북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

붙임 **2023 경상북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관광약자를 위한 포용적 관광환경조성으로 보편적 인권보장에 기여
- 초고령 사회대비 등 무장애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무장애관광환경 정비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대상 : 도내 주요 관광명소의 **관광관련 공공시설**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관광 관련 시설**

*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포함

○ 지원규모 : 도내 2~3개소 정도

- 지원금액 : 개소당 **50~200백만원(도비) 이내** ※ 지차단체 자본보조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내용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시설 개선·보수

-(**시설개선**) 주차장, 편의시설, 화장실, 수유실, 촉지도, 안내표지판 등

-(**동선개선**) 단차 제거, 경사로, 안전보행로, 바닥포장, 점자블록, 손잡이 등 설치

□ 선정 일정 및 기준

○ 선정일정

수요조사 제출	⇨	현장 확인	⇨	사업계획 접수	⇨	사업계획 심사	⇨	최종 선정
’22. 8		’23.1.16~27		’23.2.10		’23.2.10~17		’23.2.17

○ 평가항목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세부 평가항목
정량평가	자부담 매칭율	10	· 도비 보조 외 시군 매칭 비율
정성평가	사업추진 방향 타당성	20	·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유무 · 사업 추진의지 및 관심도 · 사업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의 적합성
	관광지 매력도	20	· 해당 사업지의 숙박, 음식, 이용편의시설 등 구비여부 · 지역고유의 매력있고, 널리 알려진 곳
	환경 준비도	20	· 교통 인프라, 안내체계 등 대상지로의 접근성 · 개선 후 유용성의 극대화 정도
	개선계획 적정	3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설 및 동선 개선의 실사용자 기준 고려사항 반영 정도 · 핵심지역까지의 동선의 연속성 확보
합계		100	

※ 열린관광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계획 작성 및 평가 실시

○ 신청제한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 향후 계획

○ 최종 선정 후 보조사업 교부안내 및 사업추진 : '23. 3월